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촉·해촉,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및 제10조)
- 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및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9조)
- 다. 참석수당, 위원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 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8. ~ 2026. 10. 8.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 현안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2. 파주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시정의 혁신 및 행정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단체 관계자

2. 지역 내 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망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학계,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 해촉에 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담회 등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정족수 등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안전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가 시행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시정 현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소통홍보관 (☎820-7784)
입안자	소통홍보관	최 을 영
	핵심현안TF팀장	김 태 환
	담당자	민 채 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조(수당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제안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발생
- 전문가의 자료 조사·수집 등 자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시민통합위원회 수당은 회의 참석수당과 자문수당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 정기회의 연 2회, 임시회의 분기별 1회, 분과회의 격월 1회를 기준으로 산정
 - 관련 전문가에게 대면·서면 등을 통해 현안 안전에 대해 검토보고서, 자문결과서 등 받는 경우 자문수당 지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 계		317,500	63,500	63,500	63,500	63,500	63,500
시민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정기회의	105,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임시회의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분과회의	67,500	13,500	13,500	13,500	13,500	13,500
자문수당		45,000	9,000	9,000	9,000	9,000	9,000
회의운영비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1회 추경으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소통홍보관 최을영 핵심현안TF팀장 김태환 담당자 민채린

□ 참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소통홍보관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파주038개선의견)

1. 소통홍보관-7274(2026.09.15)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26년 9월 23일(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3. 저장 버튼 오른쪽의 기안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 시스템 콜센터 (T.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6A경기파주038개선의견) 1부. 끝.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88										
정 책 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소통홍보관									
	담당자명	민채린	전화번호	031-820-778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9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소통홍보관)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첨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9조(분과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④ 성별 균형 참여(첨검포인트 :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th style="width: 35%;">해당 내용 (제·개정 법률안)</th><th style="width: 35%;">개선안 (법령 수정안)</th><th style="width: 25%;">검토사유</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td><td> 제9조(분과위원회) <중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td><td> 제9조(분과위원회) <중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td><td> 제9조(분과위원회) 제8항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의결 권한이 있으므로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성별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td></tr> </tbody> </table>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률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9조(분과위원회) <중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제9조(분과위원회) <중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률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9조(분과위원회) <중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제9조(분과위원회) <중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제9조(분과위원회) 제8항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의결 권한이 있으므로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성별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6년 9월 23일까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38			
정 책 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소통홍보관		
	담당자명	민채린	전화번호	031-820-7784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9조(분과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③ 성별 균형 참여(첨검포인트 :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 <당초 조제안> 제9조(분과위원회) <중략> ㉠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개선안> 제9조(분과위원회) <중략> ㉠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 수용 ☐ 일부수용 ☐ 불수용	■ 개선의견 전면 수용 : 제9조 개선의견에 따라 수정 <수정안> 제9조(분과위원회) <중략> ㉠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2026년 09월 17일				
파주시 소통홍보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참고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소통홍보관

(경유)

제목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소통홍보관-7271호(2026. 9. 15.)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41	소통홍보관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동의

- 붙임 1. 결과통보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감 사



주무관

류은선

감사2팀장

이선

감사관

2026. 9. 16.

류대승

협조자

시행 감사관-11186

(2026. 9. 16.)

접수 소통홍보관-7365

(2026. 9. 16.)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별관 2층, 감사관실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3

팩스번호 031-940-4089

/ eunsun94@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4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류은선
주 관 부 서	소통홍보관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행정8급 민채린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9. 16.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참고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소통홍보관

(경유)

제 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1. 소통홍보관-7270(2026. 9. 15.)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소통홍보관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산법무과장명

주무관	권선원	규제개혁통계	팀장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이재연	2026. 9. 16.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17160	(2026. 9. 16.)	접수	소통홍보관-7383	(2026. 9. 1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소통홍보관
	담당	팀장 김태환 담당자 민채린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촉해촉,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 제5조 및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및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8조) ○ 참석수당, 위원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